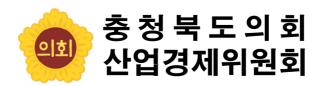


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

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502 2024. 1. 30.(화) 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4년 1월 15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414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(2024년 1월 24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국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O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미운영으로 조례의 실효성 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O 「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」 폐지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 가. 제안배경
 - O 2023년 11월, 김국기 의원(대표발의)은 과학인재국 행정사무감 사 시 해당 조례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실체 없는 조례에 대 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⁹⁾

⁹⁾ 행정사무감사 시 과학인재국장은 해당 조례가 과학인재국 소관 조례임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으며, 대신 과학기술정책과장이 해당 조례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과학인재국 소관 조례이며, 유명무실한 조례의 경우 검토 후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답변함

O 해당 조례는 2015년 5월 제정 이후 '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' 의 미운영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안됨

나.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O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은 미래과제의 발굴·선정·조사·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한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운영 실적은 아래와 같음

구분	운영 실적
2015년 1월	해당 조례 제정 이전 '미래전략기획단'을 신설,10)'지
	역전략산업 종합계획 수립 등'에 관한 업무를 수행
	하게 함
2015년 4월	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출범 및 1차 회의
	※ 산·학·연·관 기획전문가 28명(임기 2년)
2015년 5월	해당 조례 제정
	※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·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,
	미래전략기획단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
2015년 7월	2차 회의
2015년 11월	3차 회의
2016년 5월	4차 회의, 미래전략기획단 폐지 및 관련 업무를 경
	제통상국으로 이관11)
	※ 이후 별다른 운영 실적이 없음
2017년 4월	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단원 임기 종료
2020년 1월	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가 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·신
	설됨12)
	※ 이에 따라 '미래신산업정책'관련 업무와 미래 100년
	준비 지원단 운영을 과학인재국에서 담당하게 됨

^{10) 「}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(시행 2015. 1. 1.) 제6조의3(미래전략기획단)

②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무부지사를 보좌한다.<신설 2015. 1. 1>

^{1.} 지역전략산업 종합계획 수립·육성 및 지원<신설 2015. 1. 1>

^{2.} 전략산업 세부사업 총괄 및 신규과제 발굴·추진<신설 2015. 1. 1>

^{3. ~ 5. (}생략)

^{11) 「}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(시행 2016. 5. 24.) **제9조(경제통상국)** 제19호를 신설함 19.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
^{12) 「}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(시행 2020. 1. 1.) **제9조의2(신성장산업국)** 신성장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^{1.} 미래신산업정책의 발굴 및 육성 · 지원에 관한 사항

^{2.}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(이하 생략)

- 해당 조례는 주무 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이 2016년 5월 폐지된 후 6~7년 이상 유명무실하게 존치되고 있는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로 현재는 실효성이 없어 정비가불가피함
- O 또한, 해당 조례 담당 부서인 과학인재국에서도 '원안동의'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해당 조례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 및 타당성) 이 폐지조례안은 장기간 운영되지 않은 조 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실체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 정비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
- (법적합성) 상위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법률적 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- 5. 토 론 요 지: 없 음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 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 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- 1. 조례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1조제4항제1호

이사 유

- 이 조례안은 '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'의 미운영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폐지 시 예상되는 발생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 사유서를 제출함